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446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67.19㎡ 중 평면도 표시 C호(17.07㎡)를 인도하고,
나. 675,900원 및 2014. 6. 1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25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여현주

별지